
**제53회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China IP Law Education Program
단기해외연수**

2015. 6. 30

일정	2015년 6월 18일 ~ 6월 22일 (3박 5일)
----	-------------------------------

< 상세일정 >

날 짜	일 정
6/18(목) (한국시간)	17:00 인천항 국제 연안 여객터미널 → 청도 국제 여객터미널
6/19(금) (현지시간)	12:00 청도 국제 여객터미널 → 중국 청도시 향도행정호텔 이동 13:00 - 19:00 제53회 국제학술발표대회 (향도행정호텔 대회의실) 19:00 폐회 및 만찬
6/20(토) (현지시간)	12:00 China IP Law Education Program 시작 (中國信华法務) 13:00 - 14:00 The Recent Trends of IP in China 14:00 - 15:00 The Current Condition of ADR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China 15:00 - 16:45 Meeting in 中國信华法務 Office
6/21(일)	

(현지시간)	13:00 - 14:00 Introduction to China Patent System
	14:00 - 15:00 Analysis of Patent System between China and Korea
	15:00 - 15:30 Coffee Break
	15:30 - 16:30 Antitrust Regulation to Abuse Intellectual Property under the China's Current Legal System
6/22(월) (한국시간)	16:45 인천공항 도착

방문 장소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恒都行政酒店 대회의실 (제53회 국제학술발표대회)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장성로 82호 (China IP Law Education Program)

소속	직책	성명
IT법학 협동과정	연구원(석사과정)	유현우
IT법학 협동과정	연구원(석사과정)	사호진
IT법학 협동과정	연구원(석사과정)	임채성

< 업무협약서 >

업무협약서

중국 신화법무그룹과 단국대학교 법과대학(BK21+ 지식재산·정보보호법 특화 전문인재양성사업단)은 지식재산 및 정보보호법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문 인재 육성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인식과 함께 양 기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연구개발, 법학 실습교육, 재판실무 연구, 기타의 활동 분야에서 학술적·문화적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며, 공동연구의 국제화를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협력 분야는 양 기관 중 어느 한 기관 측에서 양 기관 간의 협력적인 관계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과제를 포함한다. 다만, 그 어떤 특정한 과제도 상호간의 합의와 재원의 조달가능성, 그리고 각 기관의 승인에 따라 수행된다.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a. 지식재산 및 정보보호법 분야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교환
- b. 지식재산 및 정보보호법 분야와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인력의 교류 및 공동 세미나
- c. 지식재산 및 정보보호법 분야와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 d.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된 상호간의 원조와 협력 기간은 특정한 과제나 행사의 시행 이전에 쌍방의 적절한 책임자끼리 논의한다.

본 협상은 양측의 승인에 따른 서명 후 3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본 협정은 연 단위로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그러나 어느 한 기관 측이 본 협정을 파기시키고자 할 때에는 협정 만료 6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효력은 계약 만료년도 말에 종결된다.

2015년 6월 19일

단국대법과대학(BK21+ 지식재산·정보보호법
특화 전문인재양성사업단 단장) 송 등 수



신화법무그룹
대표 백 성 호



1. 단기 해외연수 (교육 참가) 개요

○ 목적 : 한, 중, 일 각 나라의 IP환경 속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교를 통해 창조경제를 위한 연구에 있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우리가 앞장서 특화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위해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중국 산둥성 지식재산연구원 탐방 및 교육을 통하여 현재 중국 내의 IP 트렌드가 무엇이고 IP를 기반으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중국 진출에 관한 가능성도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 일정 : 2015년 6월 18일 - 6월 22일 (3박 5일)

○ 연수 참여 대학원생 : 석사과정 유현우(지식재산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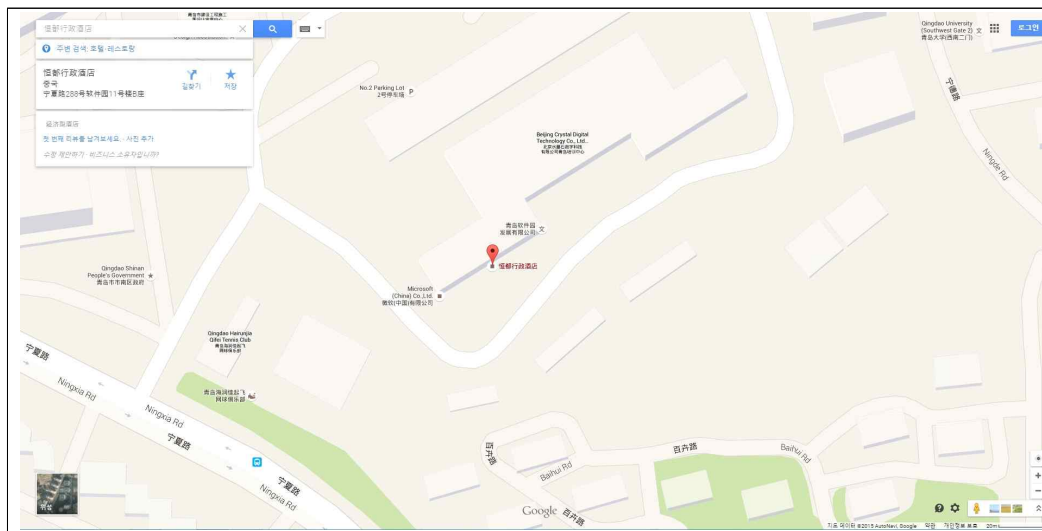
석사과정 사호진(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임채성(헌법)

○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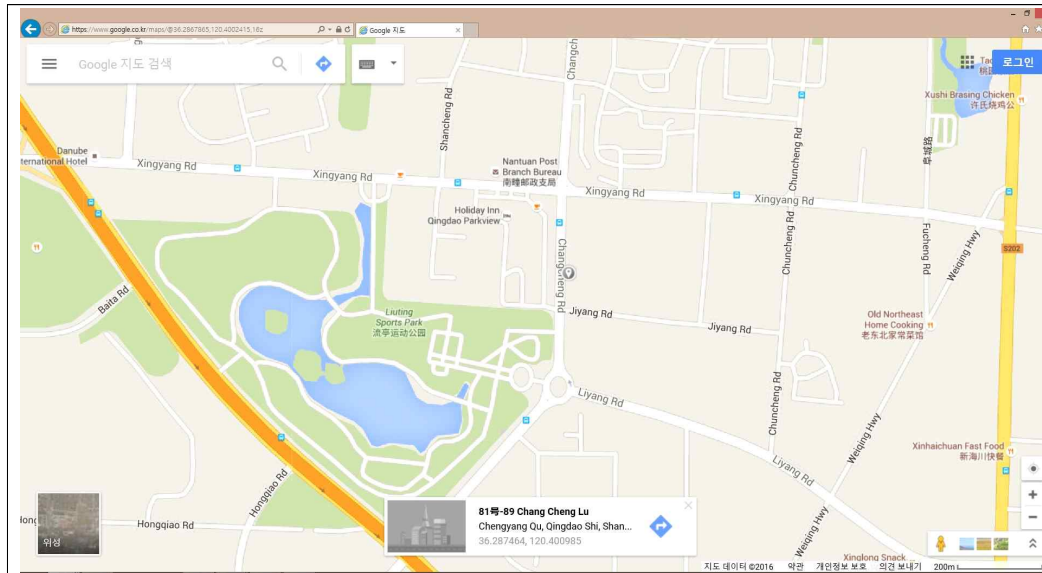
<6월 19일 금>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恒都行政酒店 대회의실 (제53회 국제학술발표대회)



<6월 20일 토 - 6월 21일 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장성로 82호 (China IP Law Education Program)



2. 단기해외연수 세부 내용

<6월 19일 금>

·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제53회 국제학술발표대회

제53회 국제학술발표대회 프로그램

“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비교법적 과제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13:00~18:45

장소 : 中國 青島市 恒都行政酒店 대회의실

주최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법제연구원/단국대학교 지식재산정보보호법사업단

▶전체진행 : 김범준 (단국대)

▶통역 : 이명학(중국 청도대학) · 임종호(연태대) · 양만식(단국대)

시간	주 제	발표 · 토론
13:00	등 록	
13:05~13:15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 정주환(단국대 법학연구소장) 축 사 : 이규형(전주중대사) 이원(한국법제연구원장) 송동수(단국대 지식재산정보보호법사업단장)
13:15~13:45	제1주제: 淺析中國企業的商業秘密保護	좌 장 :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발 표 : 高金軍(중국 중성청태 지식재산주임변호사) 토 론 : 이상모(한국법제연구원)
13:45~14:15	제2주제: Additional Protection of Celebrities' Personal Features by Unfair Competition Law: China's Perspectives (中國反不正當競爭法對名人形象要素的補充保護)	좌 장 : 장철준(단국대) 발 표 : 宋紅松(중국 산둥성 지식재산연구원 주임교수) 토 론 : 林宗浩(엔타이대교수,아태법률연구센터부주임)
14:15~14:45	제3주제: 미연방특허정책과 반론	좌 장 : 고희부(Venture Financing 대표) 발 표 : Helen Ahn(미국 뉴욕주 검사) 토 론 : 김범준(단국대)
14:45~15:15	제4주제: 自由經濟國家から福祉國家への歴史的変遷 －日本國憲法における「創造的經濟」の發展と生存權論について－	좌 장 : 양만식(단국대) 발 표 : 内藤光博(일본 센슈대) 토 론 : 김형환(중앙선관위)
15:15~15:25	Break Time	
15:25~15:55	제5주제: 專利登記與有效性案件之專屬管轄 －以歐盟布魯塞爾管轄權法體系爲討論中心－	좌 장 : 현인섭(단국대) 발 표 : 宋俊賢(대만 경찰대) 토 론 : 이기수(경찰대)
15:55~16:25	제6주제:	좌 장 : 나달숙(백석대)

	잊혀질권리와 정보폐기	발 표 : 이호용(한양대) 토 론 : 이정신(변호사)
16:25~16:55	제7주제: 클라우드컴퓨팅의 법적과제	좌 장 : 이종호(선관위) 발 표 : 정원준(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 론 : 서동엽(변호사)
16:55~17:25	제8주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의 정책과 법적방안	좌 장 : 金允國(중국 중성청태 주임 변호사) 발 표 : 손승우(단국대) 토 론 : 배유진(백석대)
17:25~17:55	제9주제: 지식재산과 법정손해배상	좌 장 : 현의섭(단국대) 발 표 : 이종구(단국대) 토 론 : 가국일(단국대)
17:55~18:25	제10주제: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법제	좌 장 : 윤유식(선관위) 발 표 :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 이수현(선관위)
18:25~18:45	연구윤리교육	발 표 : 정주환(단국대)
18:45	폐회식	폐회사 : 宮立新(중국 청도시변호사협회회장)

① 제1주제 : 중국기업의 상업기밀보호에 관한 소고

○ 까오진쥔 우띠(중국 중성청태 산둥 칭타이변호사사무소) 지식재산주임변호사는 중국의 상업기밀 소송의 일반적인 정황과 소송 중 기업의 주의사항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발표

- 1993년 12월에 시행된 『부정당경쟁금지법』을 통하여 상업기밀보호체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중국 상업기밀의 침해 사건에 관한 사법처리 상 난제를 언급한 후 앞으로 기업이 상업기밀과 관련한 소송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② 제2주제 : 불공정경쟁법률에 의한 유명인사의 개인적 특징의 추가보호

○ 송홍송(중국 산둥성 지식재산연구원) 주임교수는 유명인사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대해 불공정경쟁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

- 비록 유명인사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공정경쟁법률에 의해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

③ 제3주제 :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범죄의 기소

○ 헬렌안(미국 뉴욕주 변호사 사무소) 검사는 미국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범죄의 심각성과 기소의 방법에 대하여 발표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범죄의 심각성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미국에서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범죄의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설명

④ 제4주제 : 자유경제국가로부터 복지국가에의 역사적 변천

○ 나이토 미쓰히로(일본 센슈대학) 교수는 일본 헌법에서의 경제적 자유권과 생존권을 바탕으로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변천과정에 대하여 발표

- 일본 헌법에서의 경제적 자유권의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는 빈곤문제 혹은 환경파괴 문제를 비판하고, 생존권과 환경권의 보장을 강조하며, 자유권과 생존권, 환경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⑤ 제5주제 : 특허등록과 유효성 사건의 전속관할

○ 송준현(대만 경찰대) 교수는 중국 지식재산법원의 전속관할권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관할권 법체계를 중심으로 발표

-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관할권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특허등록과 유효성안건, 기타 관련 특허안건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 방향을 제시

⑥ 제6주제 : 삭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와 인터넷 사회의 리스크

○ 이호용(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인터넷 사회의 중요한 리스크로 자리 잡은 삭제되지 아니한 개인 정보의 등장 배경을 시작으로 잊힐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잊힐 권리에 관한 각국의 법제적 대응 등에 대해 발표

- 잊힐 권리가 갖는 문제점을 언급한 후 삭제된 데이터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

⑦ 제7주제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쟁점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원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특징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덧붙여 ICT 신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이와 같은 환경 안에서 법적 불명확성 및 결여된 법적 안정성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당사자인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함을 설명

⑧ 제8주제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한국의 정책과 법적 방안

○ 손승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발맞추어 우리나라가 입법예고한 법률안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표

- ABS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용국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도 국제적 출처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과 나아가 파생물과 전통 지식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함을 설명

⑨ 제9주제 : 지식재산권과 법정손해

○ 이종구(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상의 손해 배상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발표